

<p>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,247㎡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, </p> <p>○ 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월편에 있는 자연녹지 3,120㎡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 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0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2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<td></td></tr> </table>	의안	62	번호	
의안	62				
번호					
<p>1. 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상업지역→유통상업지역(54,000㎡) • 도시계획사항 : 일반상업지역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 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현재의 자동차 검사장 54,000㎡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 자동차검사장은 특정한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 시설이므로 시설의 성질에 빽아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,</p> <p>○ 시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				
<p>1. 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43,230㎡) 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3,230㎡) <p>5. 심사결과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0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의안	63	번호	
의안	63				
번호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양재동 24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— 서초동 1365-16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— 서초동 1360-45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의 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구 양재지구 중심지역인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43,230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 이 지역 양재 중심지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,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인접지역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 남현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하여 시의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이며, ○ 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함께 남현지구 중심지를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지정안으로 사료됨.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65</td></tr> </table> <p>1. 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: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○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9,840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39,840㎡)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39,84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○ 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지역이며, 이 지역을 지역설정에 맞게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○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 <p>5. 심사결과</p>	의안 번호	65
의안 번호	65		